『2021년 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』운영지침

((재)인천테크노파크)

1 지원대상 및 자격

ㅇ 지원대상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(참여기간 계속 유지시)
- 만 19세 이상 ~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1981.1.1. ~ 2001.12.31.)
- (재직자) 4대보험가입자
- (창업자)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
- 취·창업으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 이하인 자
 - ▶ 2021년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 : 2,741,747원

ㅇ 대상주택

- 거주자와 임대차(월세) 계약을 체결한 물건*
 - *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
 - * 부모 및 친인척 소유의 주택은 제외됨
-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
 - ▶ 보증금 100%인 전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

o 지원제외 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
- 주택 소유자
-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- ▶ 행복주택, 전세 임대주택, 사회주택 공급받는 자 등
-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- ▶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공무직
- 소비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업 종사자
-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 - ▶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, 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인천 드림For청년통장, (1석5조)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등 자산형성형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

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

ㅇ 지원내용 및 한도

- (지원방법) 선정대상자 계좌이체
- (지원금액) 취•창업 재직 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
 - ▶ 최대 8개월 지원, 생애 1회 한정 (최대 80만원 지원)
- 사업 공고일 이후 선정 월부터 지원하나, 21년 1월부터 요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적용 지원금 지급
- 사업참여 기간 중 퇴사, 폐업 등의 취·창업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그 기간은 3개월 범위 내 가능
 - ▶ 유예기간 설정 및 해제는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
 - ▶ 이직, 복직 등 취·창업 자격이 재개되어 사업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급적용



ㅇ 지원 신청 및 선정

- 참여자 모집은 별도 공고를 통해 실시, 온라인 접수
 - ▶ 신청방법 : 인천테크노파크(ITP) 유유기지 제물포 홈페이지 내 신청 유유기지 제물포 홈페이지(www.inuu.kr)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프로그램 → 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 → 신청하기 → 자격 검증(자격요건 자가 점검) → 신청서 작성 →제출
-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참여자가 직접 발급,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모든 제출서류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

o 선정결과 통보

- 통지하는 방법은 운영기관 재량으로 하고,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, 이메일 발송,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공지

< 제출서류 >

공 통

- ①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등 각1부 [서식 1~4]
 - [서식 1]「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지원신청서
 - [서식 2] 「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신청자 확인서
 -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 - [서식 4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- ② 주민등록등본 1부(주소변동이력 포함, 신청일 기준)
-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임대료 이체내역서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) 1부
-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)
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☞공동인증서등록·로그인☞민원여기요☞개인민원☞납부확인용발급조회☞출력

취 업 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▶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내 개인비회원로그인☞주민등록번호 입력☞공동인증서 인증☞증명서신청발급☞확인☞근무 중인 사업장 클릭☞신청☞출력

창 업 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- ▶국세청홈택스(www.4insure.or.kr)로그인☞민원증명발급신청☞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☞기본인적사항 작성☞신청하기☞출력
-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로서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를 말함.

ㅇ 자격요건 확인방법

항목	확인내용	확인방법	
연령	· 만 19세~39세 이하 여부		
	* 만 19세 이상 : 2001.12.31.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등본	
	* 만 39세 이하 : 1981.01.01. 이후 출생자		
	**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		
거주지	· 인천 거주 1인 가구 여부	주민등록등본, 사회보장정보시스템	
	· 사업 기간 중 인천 거주 유지	(행복e음) 조회	
소득	·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	사회보장정보시스템 (행복e음) 조회	
	· 주택 소유 등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
월세	·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		
	60만원 이하	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이체증	
	· 주택 형태, 소재지 등		
재직	· (취업자) 4대보험 가입자	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	
	· (창업자)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	사업자 등록 증명원	
기타	· 필수 및 추가서류의 제출 여부 등	관련 증빙서류	

- 참여자격 여부 판단은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공고일 이후 '신청일' 기준으로 결정

3 지원금 지급 및 관리

- ㅇ 지원금 신청
- 참여자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해 월세(임대료) 납입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지원금 신청

< 제출서류 >

공 통

- ① 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 등 각1부 [서식 5~6] [서식 5] 선정자 유의사항 동의 및 확약서 (최초 1회) [서식 6] 「취·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지원금 신청서
- ② 임대료 이체내역서 (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분) 1부
- ③ 월세 납입 계좌 통장사본 (최초 1회, 이후 계좌변동 시)
- ④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

취 업 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창 업 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- 월세지원금 신청은 선정 월 기준 최대 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, 신청 기간 경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.
- 지원금 신청 온라인 접수
 - 신청방법: 인천테크노파크(ITP) 유유기지 홈페이지 내 신청
 유유기지 제물포 홈페이지(www.inuu.kr) 접속 → 회원가입(로그인) → 프로그램 → 취창업재직청년원세지원사업 → 신청하기 → 제출
- ㅇ 지원금 지급 절차

지원금 신청

■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, 신청(청년)

서류 적격검토

- 자격요건 변동사항 확인
- 제출서류 검증

지원금 지급

⇒ I ■ 지원금 지급·관리

- 선정자 월세 지급계좌로 이체
 - ▶ 2개월 단위 신청(총 4차 / 8개월 / 생애 1회 한정)

 \Rightarrow

4 부정수급 관리

ㅇ 부정수급 유형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
- ②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
- ③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▶ 부정수급의 경우는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존 지급분 환수를 원칙으로 함.

ㅇ 부정수급 제재 조치

-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그 일부는 즉시 반환하고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①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·징수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선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.
-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7조에 따라 벌칙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에 처할 수 있음.

ㅇ 지원금 지원 변경・중단 사유

- ① 인천 지역 외 전출
 - 사업참여 중 중도에 인천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
 - 전출월까지 지원금 지급 가능(월세 10만원 이상 납입 증빙시)
- ② 월세 계약 종료
 - 선정된 참여자 월세계약이 종료된 경우
 - 월세 종료월까지 지원/월세계약 연장시 계속 지원
 - * 단 선정이후에 월세계약이 변동된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
- ③ 타 주거지원 정책 참여
 - 임대주택(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)
 -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(디딤돌 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주거안정 월세 대출,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)
 - 주거급여 지원 등
- ④ 기타
 - 자격 제외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지원 중단 신고하지 않은 경우
 -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,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연속 2회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납부사실 미제출한 경우
 - 보조금 부정수급, 지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 - ▶ 단, "지원금을 부정하고 수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"는 즉시 중단

별첨 [정부 등] 주거정책사업

분야	정책	주관 기관	주요내용
임대 택 급	행복주택	한국토지주택공사	청년(19세~39세·신혼부부·대학생)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
	청년전세임대	한국토지주택공사	청년층(대학생·취업준비생·만19세~39세)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
	청년매입임대	한국토지주택공사	청년(19세~39세),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·보수 또는 리모델링(재건축)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는 공공임대주택
	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	한국토지주택공사	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·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, LH가 시세의 90%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
	사회적 주택	한국토지주택공사	공공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(비영리단체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)이 대학생(취업준비생)과 청년(사회초년생, 예술인)에게 주변 시세 50% 수준으로 커뮤니티 및 취업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주거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
주택 구입 및 전체 자금 8 지원	디딤돌대출	한국주택금융공사	부부합산 연간급여(소득)가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(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기준으로 함. 대출 이율은 만기별, 소득별로 연 1.85%~2.4%
	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	국토교통부	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 최대 7천만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 한도 연 1.5%~2.1% 대출
	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	국토교통부	만 34세 이하 청년(단독세대주)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 5백만원 이하 & 월세 4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이하 무주택자
	주거안정 월세대출	국토교통부	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,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자에게 총 960만원을 연 1.0%~2.0%로 2년간 대출
	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	국토교통부	만 34세이하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최대 1억원을 연 1.2%로 2년간 대출(4회, 최장 10년)
취약 계층	주거급여	국토교통부	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, 중위소득 45%이하인 가구, 1인가구 기준으로 급지별 지원금액 상이
인천	주거	인천도시공사	매입임대사업, 전세임대사업 이용자